

# 예 산 총 칙

2015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08,491,261	9,254,738
일반회계	278,323,449	8,349,703
특별회계	30,167,812	905,034
기타특별회계	30,167,812	905,03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04,536	24,136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124,168	33,72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807,222	24,217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378,000	11,340
주차장특별회계	289,105	8,673
수질개선특별회계	26,363,681	790,91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401,100	12,033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126,265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 한도액은 9,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건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